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9년 6월호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투자업규정
- 나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
-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다. 인덱스사업 운영지침
- 라. KSM 운영기준
- 마. 정관
- 바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
- 나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- 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라. 신용거래약관

-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 - 가. 금융투자업규정
 - 나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19/5/3 개정·시행, 2019/5/21 개정·2019/7/2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 시장조성기능을 가진 증권금융이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 허용하기 위함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19.4.23 공포, 2019.7.24 시행)에 따라,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증권금융의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 범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규정(부칙)을 삭제(부칙 2조 삭제)
 - 2년간 한시적 허용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용
-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(1-2조의2)
 -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계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
 -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·보수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것
 -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
-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(4-4조의2)
 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등이 부담하는 경우,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
 -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(2019/5/3 개정·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,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정보차단장치 구축(2조의2)
 -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,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

〈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〉

- ▷ (조직)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
 -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수사법경찰의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수사법경찰 부서 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
- ▷ (직무)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-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·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
- ▷ (인권침해 방지)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,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
- ▷ (증선위·검찰 협조)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,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,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의 필요성을 검토
 -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검토

-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(17조의2, 17조의3, 17조의4, 36조 1항·3항)
 - (대리인 참여 및 열람·복사)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입회 허용 및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등의 열람·복사 허용

1) 17조의4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〈예외 사유〉

- ①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②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
- ③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
- ④ 조사과정을 촬영, 녹음, 기록하는 경우.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.
- ⑤ 기타 ① 내지 ④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
- ⑥ 증거 인멸·조작, 공범의 도주,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-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

- (영상녹화 고지)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

- (사전통지 내실화)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제재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사자에게 재통지

□ 조사·심리기관간 역할분담(45조 1항)

-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(자본시장조사단)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

-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

- 금감원 조사사건 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 공동조사 요청 가능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가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| 라. KSM 운영기준 |
|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| 마. 정관 |
| 다.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| 바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|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(2019/5/2 개정·2019/5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의 공시 건전성 제고 및 상장법인 공시부담 경감하고, 경미한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절차 개선을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공시대리인의 지정(44조의2)

-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허용되는 상장법인의 범위를 구체화(44조의2 1항)
 - ① 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장법인,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상장법인
-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거래소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(44조의2 2항)
 - 규정상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 요구(44조의2 3항)
- 공시대리인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, 불성실공시 발생시 제재 근거 마련(44조의2 4항)
 - ① 매년 보수교육 실시, ② 불성실공시 발생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실시, ③ 고의·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 발생시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 요구 가능
- 공시대리인 제도가 국내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, 기존의 외국법인 공시대리인 관련 규정 정비(22조, 44조 7항)

□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절차 개선

-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행위는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심의 절차 개선(32조 12항)
 - (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행위) ①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②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이하, 위반의 중요성이 통상의 위반 이하이며, ③ 최근 1년간 공시위반이 없는 경우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19/5/3 개정·2019/5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세칙에 위임한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화(21조의3)하고, 신고서식을 개정(공시서식5·7)
 - ① 공시담당자 경력 2년 이상인 자, ② 변호사,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갖춘 회사에서 2년 이상 유관업무를 수행한 자로서, ③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
- 고의·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시 공시대리인 교체요구 근거 마련(17조의2 1항, 21조 2항, 21조의2 2항)
- 국내기업에 대하여 공시대리인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, 기존의 외국법인 공시대리인 관련 규정 정비(11조의2, 21조 1항 2호)
 -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,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일 것, ②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경력 1년 이상인 자, ③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, ④ 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
-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(15조 9항)
 - 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, ②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, ③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, ④ 규정 32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

다.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(2019/5/2 개정·2019/5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지수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적정성 보고 등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지수산출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보고 명시(4조)

- 지수산출의 적정성 점검 및 점검기간을 명시하고, 점검결과를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

라. KSM 운영기준 (2019/5/24 개정·2019/5/2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KSM(KRX Startup Market)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」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(2조 1항 5호 하목)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6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
 -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목적: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

마. 정관 (2019/5/2 개정·2019/5/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(TR)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외 조문의 법령정합성 및 표현명료성을 제고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거래소 사업목적에 TR 업무 추가(2조 3의3호)

-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

□ TR 업무규정의 시장위원회의 결의 근거 마련(42조 1항)

- 시장위원회 결의 대상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 추가
 - 시장위원회 결의 대상: 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, 공시규정, 상장규정 및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업무규정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
□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 TR 업무 반영(47조)

-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·보관·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반영
 - 기존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(CCP)로서의 거래정보 보관·관리·보고 업무 및 신규 TR 업무(수집·보관·관리 업무)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

□ 기타 조문 정비

- 법상 표현이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(9조)
 - (기존) 우선주식 → (개정) 종류주식(상법 344조)
-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명확화(9조의5 1항)
 - (기존) 상법 542조의3 3항 → (개정) 상법 542조의3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 4항
- 주주의 거래소 신고대상 명확화(9조의9 3항)
 - (기존) 1항 및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→ (개정) 1항 및 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

바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(2019/5/31 개정·2019/6/10)¹⁾

1) 개정 이유

-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,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(2019.6)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배출권 거래시장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(4조)

-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외부사업 감축량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분에 대한 매매거래 대상상품을 규정
 - 해외 외부사업 감축량과 해외 상쇄배출권(해외 외부사업 감축량이 제출용으로 전환된 것)을 매매거래 대상상품으로 추가

1) 6조 및 57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□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 및 결제시한(6조 및 57조)

-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은 입찰호가 접수시간(경매일 13시~14시)으로 함
 - (근거)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2018-71호) 4조

□ 시장조성제도의 운영절차 및 의무이행 평가방법(52조)

- 환경부의 관련 고시를 반영하여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·방법 등을 규정하고, 거래소가 대행하는 시장조성자 의무이행실적 평가방법 명시
 -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 2019-31호)
 -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간 계약에 따른 현행 유동성공급자 제도는 유동성공급자 물량 확보가 어려워 폐지하고, 환경부가 시장조성자와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
- 결제시한은 매매거래 당일 13시30분으로 하되, 유상할당 경매 등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
 - (배경) 유상할당 경매의 세부사항 변경 시 주무부처의 규정 변경에 맞추어 탄력 대응
 - (근거)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2018-71호)

□ 배출량 인증 등 관련 이의신청 회원의 매매거래기간 등 개선(5조 및 17조)

- 배출권 할당의 조정·취소 및 배출량 인증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배출권 매매거래기간을 실제 배출권등록부 폐쇄일(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후 10일)까지로 조정
 - (기존) 배출권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이행연도 다음해의 9월 30일까지로 함
 - (개정) 배출권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이행연도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되,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 후 10일까지로 연장
- 회원탈퇴가 예정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은 매매거래기간이 연장됨에 맞추어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
 - (근거)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회원으로 함(규정 2조 1항 5호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| 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|
| 나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| 라. 신용거래약관 |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(2019/5/16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(2019.4.12. 금융위 보도자료)를 지원하기 위함
 - 기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한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과 예탁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구분되며,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채권에 한하여 상환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음

2) 주요 내용

- 비예탁 채권에 대한 상환현황 분기보고 신설(II-11)
 -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매분기 발행인으로부터 상환현황을 집계하여 예탁결제원에 보고
 - 매분기말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별 분기 중 상환금액과 분기말 미상환 잔액 등을 예탁결제원에 보고
 - 구체적인 보고내용, 양식 등은 예탁결제원에서 검토 후 배포(6월 말 자료부터 집계) 예정
 - 전자증권제도 시행(2019.9.16일 예정) 이후, 예탁결제원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된 채권의 상환현황 관리(예정) → 전자등록된 채권은 보고대상에서 제외

나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2019/5/16 개정·2019/5/17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에 있어 규제의 공백을 없애고, 위규행위와 제재수위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
 - (규제의 공백) 시험합격이 아닌 경력, 교육 요건 등을 충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면직 후 5년 이내에도 재등록이 가능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 1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

- (규제의 형평성) 징계면직보다 하위 제재대상인 감봉, 정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“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” 제재가 가능하여 어떠한 등록요건으로도 제재기간 동안 주요직무종사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

2) 주요 내용

□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(5년)를 추가(별표 1)

- (기존) 전문인력규정 제3-13조 제1항 각 호의 위법·부당행위와 관련한 징계면직자에 대한 제재
 - “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(시험합격취소), 자격시험 응시제한 5년, 등록말소”를 규정하여 시험합격을 통하여 주요직무종사자로 재등록하는 것을 5년간 제한
- (개정) 등록거부(5년)를 추가하여 시험합격 뿐만 아니라 어떠한 등록요건으로도 재등록하는 것을 5년간 제한

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19/5/16 개정·2019/5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채용금지 근거조문 부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없애고, 채용심사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 - 채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제재규정 5조가 상위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삭제되어 근거조문이 부재한 상태
 -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협회 규정으로 특정업권 전체에 대하여 징계퇴직한 자 등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존재

2) 주요 내용

□ 채용금지 조문을 삭제하되 채용심사 조문을 신설

- (기존) 금융위원회의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5조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행위로 징계퇴직한 자 등에 대해서 5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

〈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〉

제5조(제재대상 위법·부당행위) (2017.10.19 삭제)

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.

1. 금융관련법규 위반 등
2. 횡령, 배임, 절도 등
3.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 저해
4. 금융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
5.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
6.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
7.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·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

- (개정) 직원채용 시 근로계약 종료, 직무 전문성,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(2-70조)
 - 채용결정 전에 협회로부터 징계면직 전력 등을 조회하도록 하여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
 -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채용예정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를 협회에 조회하여야 함

라. 신용거래약관 (2019/5/22 개정·2019/5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주식대여 서비스 참여 증권회사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증권유통금융 관련 근거 조항 마련(1조 3항)
 - 회사가 증권유통금융 사용시 선택적으로 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적용(1조)에 근거 조항 마련
- (고객의 동의 등)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 필요(2조 1항)
 - 고객은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담보증권의 활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 가능(2조 2항, 3항)

- (담보증권 활용 수수료 지급)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을 동의한 고객에게 활용 수수료 지급(3조)

- (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)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,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(4조 1항)
 -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총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(4조 2항)
 -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고객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권리 행사 가능(4조 3항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